

20. 都市計劃案에對한議會意見聽取(10件)(서울特別市長 提出)

(17時 14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0項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10件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都市整備委員會 洪濤棟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濤棟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洪濤棟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번 第81回 臨時會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意見聽取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은 第80回 臨時會時 保留되었던 17件과 新規로 接受된 5件 등 모두 22件으로, 그 案件들은 市民의 住居環境 改善을 위한 住宅改良再開發 事業 區域指定 및 變更과 이 指定計劃에 따른 風致地區 一部 解除案, 그리고 이미 決定하였던 都市計劃 用途地域이나 施設들이 現況에 맞지 않아 이를 整備하기 위한 變更案, 그리고 自治區 都市基本計劃에 따라 自治區의 地區中心地와 生活圈中心地를 各各 商業地域과 準住居地域으로 變更하면서 各各 中心地에 都市設計地區指定案 등에 대해서 審査하였습니다.

특히 地方化時代에 따라 實施하는 自治區 都市基本計劃에 의한 用途地域의 變更은 各案件마다 우리 市民들의 地域社會 發展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층정을 깊이 理解하면서, 모든 案件을 都市計劃의 法令을 좇아 서울시가 均衡 있게 開發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토대로 심도 있고 면밀한 審査를 위하여 各各 現場確認을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18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3)	의 결

그 審査한 結果에 대해서 報告드리면, 市에서 提出된 都市計劃案이 法規에 適合하고, 地域實情에 맞다고 認定되는 梧柳第3住宅改良再開發區域指定件 外 8件에 대해서는 市長의 決定案에 同意 意見を 提示하였고, 地域形便이나 都市計劃施設 內容으로 보아 市長決定案에 특별히 意見이 있는 1件은 條件附 同意도록 하였으며, 案件의 성질상 現地確認이 필요하거나 法令의 檢討가 더 要求된 12件의 案件에 대해서는 다음 會期에 再審査하도록 이번 會期에는 保留하였습니다.

案件別 審査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都市計劃案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시고, 議員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都市計劃案에 대한 意見이 提示될 수 있도록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10件을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各各 採擇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10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건의청취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상정건수 : 22건(신규 5건, 보류 17건)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20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3)	보 류
59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61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62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63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64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65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67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68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69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73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74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75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76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77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78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79	'95. 9.12	'95. 9.13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보 류
80	'95. 9.12	'95. 9.13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100	'95. 9.29	'95.10. 4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3)	보 류
154	'95.10.10	'95.10.11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158	'95.10.13	'95.10.17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10.25)	의 결

2. 상정일자

- 도시계획국(총 19건)
제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95. 10.25) 상정, 심사
- 주택국(총 3건)
제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10.23) 상정, 심사

3. 제안이유 및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 소관 19건)
주택국장 양 감(주택국 소관 3건)

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전별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전별내용 별첨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9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지정)안대로 동의처리토록 하였고,
-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이 있는 1건은 조건부 동의토록 하였으며,
- 12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
의견청취의건 안전별심사결과

시 결정(지정)안과 의견이 같음(9건)

의안 번호	18
----------	----

1. 건 명 : 오류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오류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 내 용
 - 면 적 : 12,888㎡(사유지 10,762㎡, 국·공유지 2,126㎡)
 - 건축물 : 78동(유허가 66동, 무허가 12동)
 - 가구수 : 226세대(가옥주 76, 세입자 15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주민동의율 : 토지 77%, 건물 82%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국·공유지 2,126㎡와 사유지 10,762㎡ 등 12,888㎡의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오류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예정구역 내에는 91필지의 사유지가 있